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

제정 2009. 6. 12 훈령 제529호 일부개정 2010. 5. 7 훈령 제549호

- 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안양시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지역업체"란 안양시(이하 "시"라 한다)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.
 - 2. "지역건설산업체"란 시의 관할구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건설 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훈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4조(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) ①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 보호 및 육성과 지역 업체 관련 제도개선, 기술정보 제공,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③ 시에서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사용) ①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나 물품의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,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.
 - ② 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 시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여야 한다.
- 제6조(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)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

- 는 범위에서 공동도급 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 극 권장 할 수 있다.
- 1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24조에 따른 지역 의무 공동도급일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49퍼센트 이상
- 2. 민간이 시행하는 지역 건설 산업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비율의 확대
- 제7조(공사일부 하도급) ① 종합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종합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물량 중 50퍼센트 이상을 지역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5. 7>
 - ② 종합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8조(분할발주 등)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사업목적의 달성 및 유지관리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·시행할 수 있다.
- 제9조(실태조사) ①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여부, 하도급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 - 1. 지역건설산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·적정성에 관한 사항
 - 2. 지역의 생산자재 사용 및 지역인력의 참여에 관한 사항
 -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 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7일전까지 조사일시,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0조(하도급의 적정성 심사)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준용규정)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5. 7 훈령 제549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